

클린카드제 실시

□ 목적

- 유흥업소 등에서 업무추진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오락·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클린 신용카드 도입

□ 내용

- 적용대상 : 본부, 각 사업소
-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

제한업종	내 용	비고
일반유흥주점	접객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(룸살롱, 단란주점, 가라오케, 가요주점, 비어홀, 맥주홀, 카페, 바 등)	
무도유흥주점	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(클린, 극장식 주점, 나이트 클린, 카페, 스펀드바, 유흥주점 등)	
타 주점	대포집,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(와인바, 포장마차, 간이주점, 맥주전문점, 생맥주집, 선술집 등)	
위생업종	이·미용실, 피부미용실, 사우나, 안마시술소,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	
레저업종	실내·외 골프장, 당구장, 노래방, 사교춤, 전화방, 비디오방	
사행업종	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	
기타업종	성인용품점, 총포류판매	

- 공공유류구매카드 : 조달청 단가계약 지정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

□ 법인카드 발급현황

[2019. 03. 기준]

관리부서	클린카드	공공유류카드	비 고
경영지원실	5	1	
주차검침사업소	1		
안동체육관팀	1		
학가산온천팀	1		
교통약자지원팀	1	16	
환경사업소	3	1	
청소년수련관	1		
하아그린파크팀	1		
단호휴양팀	1	1	
계명산휴양팀	1		
장사공원팀	1		